

제9호(2012.2.8)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최 세 균 정 대 희

1.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란?	3
2. 기존 회원국(P4)의 협정 내용	8
3.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시장개방 영향	13
4. TPP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용 문의: **최세균** 선임연구위원 02-3299-4121 skchoi@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약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TPP는 창설 초기에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음.

2008년 2월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8월에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 의사를 밝혔음. 2010년 10월에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한 데 이어 일본은 2010년과 2011년 11월에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음. 비슷한 시기에 캐나다와 멕시코도 협정 참여를 선언하였고, 필리핀, 대만 등도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TPP는 APEC이나 ASEAN+3(또는 6)보다 먼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할 경제통합체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기존의 TPP 회원국 이외에 일본, 미국과 같이 정치·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국가들이 가입을 선언을 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가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후발 가입국은 이미 체결된 TPP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야 할 입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TPP 가입에 따른 농업부문의 추가적인 개방 부담은 다음과 같음. 미국에는 감자, 대두, 돼지고기와 사과·배·포도·감귤·오렌지·참다래 등 대부분의 과일류,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의 품목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ASEAN에는 낮은 수준으로 양허를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곡물류, 축산물, 열대성 과일 및 온대성 과일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배추, 오이, 당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소류에서도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칠레에는 옥수수, 감자, 쇠고기, 요구르트를 제외한 낙농품, 사과, 배, 감귤,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과 오이, 호박, 배추, 당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소류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페루에는 옥수수, 대두(채유 및 박용), 쇠고기, 버터·치즈·분유 등의 낙농품, 천연꿀, 감귤, 배, 사과, 포도, 오렌지,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땅콩, 생강, 참깨, 표고버섯 등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기존 FTA에서 우리나라의 비농산물 분야 시장개방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관세율도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시장개방의 이익은 제한적임. 반면 농산물 분야는 우리의 시장개방 수준이 비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관세율도 높아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1.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란?

1.1. TPP의 개념 및 추진 배경

□ 2005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 통합 목적으로 출범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또는 환태평양(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 2006년 1월까지 회원국 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
 - 협정에는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 조치, 위생검역, 무역에 있어서의 기술장벽, 서비스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 정책 등 최근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분야 포함
- 칠레와 뉴질랜드가 양자간 FTA 협상을 논의하고, 뉴질랜드와 싱가포르가 경제동반자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CEP)을 체결(2000년)하면서 3국간의 ‘태평양 3개국 경제동반자협정(Pacific Thre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P3 CEP)’ 결성의 움직임이 보였음. 2002년 APEC 정상회담에서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간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졌음. 브루나이는 2차 협상부터 옵서버로 참여
-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 간 협정에 대한 서명은 2005년 6월에 이루어졌으며, 2006년 5월 28일에 발효
 - 2005년 6월 한국의 제주도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P4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타결 선언. 협정이 발효된 것은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간에는 2006년 5월 28일부터, 브루나이는 7월 12일부터 그리고 칠레는 11월 8일부터 등으로 차이가 있음

□ 미국이 2008년 협정 참가를 결정하면서 영향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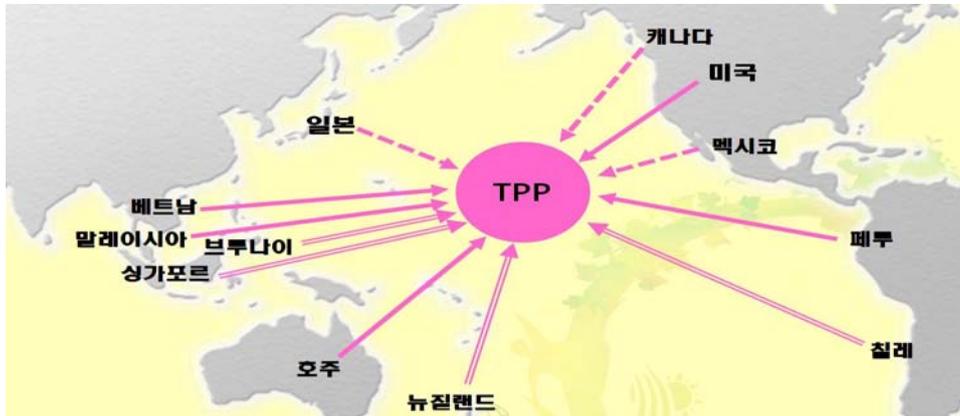
- 협정 발효 이후 미국을 비롯한 후발 5개국(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에 자극받은 일본, 필리핀, 대만도 TPP 참여에 관심을 보임
 -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1998년의 외환 위기 이후 급속하게 경제협력의 수준과 폭을 확대해 왔으며, 한·중·일 3국은 모두 ASEAN과 FTA를 체결한 바 있음. 특히 중국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하는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세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급속하게 확대

- TPP는 창설 초기에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로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
 -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경제외적 측면에서 보면 정치, 외교, 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때문임

- 미국이 TPP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경우 TPP 회원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통상전략은 중국과의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미국은 TPP의 확대 발전을 위해 한국과 일본 등의 참여를 희망. 특히, 일본의 TPP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양국간의 통상 문제 가운데 하나인 쇠고기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일본을 압박하지 않고 유연한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알려짐(연합뉴스 2011. 1. 6.)

- 중국은 ASEAN+3¹⁾를 아태지역 경제통합 또는 지역통합의 기본축으로 인식하는 입장이며, 미국과 일본의 TPP 참여는 중국의 이러한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2010년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자유무역지대의 실현을 위하여 TPP, ASEAN+3, ASEAN+6 등에 기반을 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수준의 합의에 그친 것은 중국, 미국, 일본 등의 역내 역할이 확립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며, 중국과 미국의 역내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

그림 1. TPP 협상 참여국가 현황



1.2. TPP 논의 동향

□ 실무협의를 구성하여 작년 말까지 제9차 협상 진행

- TPP 참가국들은 2011년 11월 APEC 정상회담(하와이) 시 타결을 목표로 24개 분야의 실무협의체(working group)를 구성하여 협상 진행
 - 2002년: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교섭 시작. 이후 브루나이 참가
 - 2006년: P4 협정 발효

1)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은 미국이 추진해왔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심의 환태평양경제통합, 중국이 미국을 배제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아시아경제통합(ASEAN+3),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ASEAN+3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를 포함시키는 ASEAN+6 중심의 범아시아경제통합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2008년: 미국, TPP 협상 참가의사 표명
- 2010년: 기존 P4 협정 회원국 외에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등 4개국이 TPP 협상 개시(3월). 말레이시아 협상 참가(10월)

표 1. TPP 협상 일정

협상	협상 시기	개최국	비고	
제1차	2010년	3월	호주	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의 참가 표명
제2차		6월	미국	
제3차		10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참가 표명
제4차		12월	뉴질랜드	
제5차	2011년	2월	칠레	
제6차		3월	싱가포르	
제7차		6월	베트남	
제8차		9월	미국	
제9차		10월	페루	

자료: 임송수 외, 2011.

- 2011년 들어 칠레에서 열린 제5차 협상부터 각종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 시작
 - 제5차 협상에서 상품의 시장접근, 무역 구제, 기술적 무역장벽(TBT), 환경, 법적·제도적 이슈,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논의를 계속. 새로운 주제로 투자, 전자상거래(e-commerce), 원산지 규정,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²⁾에 대한 논의 착수. 특히 투자에 관한 논의 최초 P4 협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6차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리적 표시, 관세, 섬유, 휴대전화 국제로밍 요금,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제7차 회의에서는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명성, 통신, 관세, 환경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특히 관세,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리적 표시 분야에서 논의의 진척이 있었음
 - 제8차 회의는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으며 TPP 협상의 일반적인 윤곽

2) 개도국이 국제협정상 의무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

(broad outlines)을 잡기 위해 노력하였음. 관세, SPS, TBT, 통신, 정 부조달, ‘중소기업, 규제 의 정합성(regulatory coherence), 경쟁, 성장’ 등의 이슈들은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음. 미국은 의약, 노동 문제 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였음

- 제9차 회의는 페루 리마에서 열렸으며 지적재산권과 같은 민감한 이 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슈들에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진척을 보였다 고 평가하고 있음
- 2012년 3월에 호주 멜버른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

□ 일본은 2011년 11월 APEC 정상회담(호놀룰루)에서 참여 선언

-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는 TPP 참여 검토 의사를 표명(2010.10)한 후 요 코하마 APEC 정상회의(2010.11)에서 TPP 참여에 대한 협상 의지를 공 식화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정보수집 및 참가국과 협의 개시를 발표
 - 일본의 TPP 관련 정부 기관들(내각부,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업성 등)은 TPP 협상 참여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는 등 TPP 협상에 대비 하고 있음
 - 일본의 요시히코 노다 총리는 2011년 11월 호놀룰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TPP 참여를 선언
- 캐나다와 멕시코도 2011년 11월 13일 열린 APEC 회의에서 TPP 참여를 공식 발표
 - 이에 따라 TPP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는 미국, 호주, 싱가포르, 뉴질 랜드,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브루나이, 일본, 캐나다, 멕시 코 등 12개국으로 늘어났음
- 우리나라는 TPP 참가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정한 바는 없 으나, 2010년 11월에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TPP 협상 참가 검토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일본 아사히 신문, 2010.11.13).
 - 향후 일본, 미국 등이 TPP에 가입하고 대부분의 APEC 회원국들이 TPP 회원국이 되는 경우에 우리나라도 가입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 으로 예상

2. 기존 회원국(P4)의 협정 내용

□ TPP 협정의 구성

- FTA 협정문 체계는 대체로 전문(Preamble), 본문(장, Chapter),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서한(letter) 등으로 구성
 - 부속서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관세양허 계획 등과 같이 내용이 방대한 것을 별도로 정리하거나 협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며, FTA 협상에서 통상장관 등 정부 당국자 간의 서한도 협정문의 해석을 위한 내용이나 관련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TPP 협정은 전문, 20개 장(chapter), 부속서 등으로 구성되어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를 포괄
 - 전문
 - 본문 1~20장
 - 부속서 I ~ IV장

표 2. TPP 협정의 구성

장(Chapter)	내 용	장(Chapter)	내 용
전문		12	서비스 무역
1	설립조항	13	일시적 입국
2	정의	14	투명성
3	상품 무역	15	분쟁 해결
4	원산지 원칙	16	전략적 제휴
5	통관 절차	17	행정 및 제도
6	무역구제	18	일반 조항
7	SPS 조치	19	일반 예외
8	TBT 조치	20	최종 조항
9	경쟁정책	부속서 I	양허표
10	지적재산권	부속서 II	특별 원산지 규정
11	정부조달	부속서 III & IV	서비스 양허표 1부 & 2부

자료: MFAT(<http://www.mfat.govt.nz/>)

□ 뉴질랜드 시장개방 분석

- 뉴질랜드는 TPP 가입 협상에서 10년 이내에 모든 상품(농산물 포함)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받아들였음. 특히 농산물은 비농산물에 비해 양허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
 - 뉴질랜드는 비농산물보다 농산물에 국제경쟁력이 높은 국가라는 특성이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
- 뉴질랜드는 TPP 협상에서 농산물 가운데 8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철폐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였을 뿐 나머지 품목은 기존의 무관세 품목을 포함하여 즉시 완전히 개방되는 형태를 취했음
 - 관세의 즉시철폐 예외에 속하는 8개 품목은 기타의 조제식료품(21류)에 속하는 품목으로 알코올이 포함된 얼음혼합물(HS 2106류)에 속하는 품목임.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7%이며, 2006년부터 관세감축이 시작되어 2010년에 철폐

표 3. 뉴질랜드의 양허안의 농산물/비농산물 비교

구 분	즉시철폐	3년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기존무관세	합 계
전체 상품	1,693	114	495	659	4,276	7,237
	23.4%	1.6%	6.8%	9.1%	59.1%	100.0%
농산물	365	-	8	-	619	992
	36.8%	0.0%	0.8%	0.0%	62.4%	100.0%

자료: WTO, 뉴질랜드 양허안(TPP)

□ 칠레 시장개방 분석

- 칠레의 관세 철폐 유형은 즉시 철폐, 3년 철폐, 6년 철폐, 10년 철폐, 12년 철폐 등 다섯 가지로 단순하지만 뉴질랜드에 비해서는 12년 철폐 한 가지가 많고 5년 철폐 대신 6년 철폐로 하는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 반영
 - 칠레는 TPP 가입 협상에서 관세 철폐 기간을 최장 12년으로 설정하였음. 이는 뉴질랜드에 비해 2년이 길게 설정된 것이지만 현행관세 유지 등 시장개방의 예외 품목은 없음

- 농산물의 3년 철폐 대상은 103개로 전체 농산물의 9.7%임. 6년 철폐와 10년 철폐 대상 농산물은 각각 70개와 48개임. 농산물의 5년 이내 단기 철폐 비중은 비농산물보다 낮고 10년 이상 장기 철폐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4. 칠레의 TPP 관세철폐 양허 내용

구 분	즉시철폐	3년철폐	6년철폐	10년철폐	12년철폐	기존 무관세	계
전 체	5,855	898	862	218	34	35	7,902
	74.1%	11.4%	10.9%	2.8%	0.4%	0.4%	100.0%
농산물	803	103	70	48	34	0	1,058
	75.9%	9.7%	6.6%	4.5%	3.2%	0.0%	100.0%

자료: WTO, 칠레 양허안(TPP)

- 농산물 가운데 관세철폐 기간이 6년인 것은 주로 낙농품, 채소, 곡물, 곡분 및 전분, 채소·과일 조제품 등에 분포
 - 10년 철폐 품목은 HS 10류의 곡물 가운데에서는 밀과 메슬린이 유일하고, 11류의 곡분 가운데에서는 밀가루가 유일함. 나머지 46개의 10년 철폐 품목은 동식물성유지와 당류 및 설탕과자에 속함
 - 관세 철폐 기간이 12년으로 설정된 34개 품목은 모두 HS 4류의 낙농품으로 밀크, 크림, 유장, 버터, 치즈 등임. 12년 철폐 유형으로 양허된 품목은 세이프가드가 적용됨. 세이프가드는 발효 후 6년간 적용될 수 없고, 관세가 철폐된 이후에도 적용될 수 없음
- 칠레가 TPP 협상에서 농산물 가운데 민감품목으로 설정한 것은 낙농품, 설탕, 밀, 식용유 등으로 분석됨

□ 싱가포르 시장개방 분석

- 싱가포르의 HS 분류에 따른 전체 상품은 1만 702개이며, 이 가운데 6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관세가 부과되는 6개 품목은 모두 농산물임

- 기존 무관세 품목이 아닌 6개 품목은 HS 22류에 속하는 맥주를 비롯한 주류이며, 현재 종량세가 부과되고 있음. 이들 품목의 관세는 TPP 협정에서 즉시 철폐로 양허

표 5. 싱가포르의 농산물 중 즉시철폐 품목

세번	품목명	관세율
22030010	맥주	\$1.70/ltr
22030090		\$0.80/ltr
22089010	SAMSU	\$8.00/ltr
22089020		\$8.00/ltr
22089030		\$8.00/ltr
22089040		\$8.00/ltr

자료: WTO, 싱가포르 양허안(TPP)

□ 브루나이 시장개방 분석

- 브루나이는 전체 상품 10,702개 가운데 기존 무관세 품목이 7,289개로 전체의 68.1%에 달할 정도로 시장개방 수준이 높으며, 관세 부과 상품 가운데 TPP 협상에서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한 품목은 없음
 - 관세양허는 5년 철폐³⁾, 7년 철폐⁴⁾, 10년 철폐, 양허 제외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즉시철폐 품목이 전무하다는 것은 다른 협정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외적인 현상

표 6. 브루나이의 TPP 관세양허 내용

구 분	즉시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10년 철폐	기존 무관세	양허 제외	계
전 체	-	575	1,656	1,098	7,289	84	10,702
	0.0%	5.4%	15.5%	10.3%	68.1%	0.8%	100.0%
농산물	-	4	16	-	1,058	80	1,158
	0.0%	0.3%	1.4%	0.0%	91.4%	6.9%	10.8%

자료: WTO, 브루나이 양허안(TPP)

- 3) 농산물의 경우 4년간 관세감축 유예 후 5년차에 무관세가 되는 것을 5년 철폐로 분류하였음
- 4) 농산물의 경우 6년간 관세감축 유예 후 7년차에 무관세가 되는 것을 7년 철폐로 분류하였음

-
- 농산물은 1,158개 품목 가운데 기존 무관세 품목이 1,058개로 전체의 91.4%를 차지하고 있음. 농산물 시장은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이 관세 없이 수입될 정도의 시장개방 수준을 나타냄
 - 7년 철폐에 속하는 16개 품목은 모두 HS 9류의 차, 커피, 향신료임.
 - 5년 철폐 4개 품목은 HS 21류의 기타조제식료품에 속하는 상품

 - 양허제의 84개 품목 가운데 농산물이 80개를 차지하고 있음. 양허제의 품목은 주류(HS 22류) 47품목, 담배(HS 24류) 25품목, 기타조제식료품(HS 21류) 8품목 등임. 기타조제식료품에 속하는 품목들도 알코올성 음료 조제와 관련된 것
 - 브루나이가 농산물 가운데 80개 품목을 시장개방 예외로 취급하였지만 이것은 종교적인 측면과 국민 건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TPP 협정의 예외 없는 시장개방이라는 일반적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3.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시장개방 영향

3.1. TPP 가입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개방 전망

□ TPP의 기본 목표는 예외 없는 관세철폐 지향

- TPP의 기본적인 목표가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개방의 예외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관세철폐 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존 회원국들은 대부분 이 원칙을 지키고 있음
 - 기존 4개 회원국 간에 맺어진 협정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시장개방 예외와 10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 품목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 페루,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5개국의 TPP 가입 조건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어느 정도 유연성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음
 - 초기 가입국인 P4는 시장개방에서 농산물이 민감분야로 작용하지 않을 만큼 국제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이었으나,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5개국의 농산물에 대한 민감성은 P4 국가보다 높은 상황
 - 특히 협정 참여를 검토 중인 일본이 협상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TPP 가입 협상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임

□ 기존에 체결된 FTA 협상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필요

- 우리나라는 TPP 회원국 및 협상 진행 중인 국가 가운데 미국, 페루, 칠레,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는 이미 FTA를 체결
 - 따라서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부담은 우리나라가 P4 국가 및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와 맺은 FTA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우리나라가 4개 TPP 회원국 및 가입 협상중인 5개국 가운데 FTA를 체결(또는 협상 타결)하지 않은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뿐임. 우리나라는 호주, 뉴질랜드와 FTA 협상이 진행중
 - FTA 체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따른 농산물 분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은 크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러나 추가적인 부담은 실제 FTA 체결 국가와의 시장개방 수준과 TPP 가입에 따라 예상되는 시장개방 수준을 비교 분석해야 판단 가능
- 기존의 TPP 협정 골격이 후발 가입 희망국들의 가입협상에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사회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극히 제한된 농산물 이외에는 시장개방의 예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관세철폐 기간도 10년을 초과하는 품목은 매우 제한적

3.2. TPP 가입에 따른 품목별 영향

□ 곡물: 미국에 대한 추가적 시장개방 부담이 크게 작용

- 곡물류 가운데 감자(식용)와 대두(식용)를 제외한 다른 주요 곡물의 시장개방 수준은 한·미 FTA가 가장 높음. 감자와 대두의 시장개방 수준은 한·ASEAN FTA가 한·미 FTA보다 높음
 - 따라서 미국에 대한 감자와 대두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ASEAN과의 FTA에서 대부분의 곡물류에 대한 관세감축 수준이 20% 정도로 낮게 설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곡물류에 대한 관세는 수백%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TPP 가입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칠레와 페루에 대한 곡물류의 시장개방 부담은 옥수수, 감자 등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채유용 및 박용 대두에 대한 시장개방 부담은 칠레와 페루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음(미국과 ASEAN에 대해서는 기존 FTA에서 이미 개방 수준을 높게 설정)

표 7. TPP 참여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 예상 품목(곡물)

구 분	미국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TPP 영향
감자	현행유지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 10년 ¹⁾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고구마	10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16년	ASEAN, 칠레, 페루, 싱가포르
녹두	15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10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메밀	15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16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쌀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보리	15년	2016년까지 5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 16년 ²⁾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대두 (채유/박용)	즉시	2010년	10년	DDA 이후	16년	칠레, 페루
대두 (기타)	현행유지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주: 우리나라가 TPP 협상 참여시 쌀은 양허 제외, 나머지 품목은 10년 철폐로 가정함

□ 축산물: ASEAN에 대한 추가적 시장개방 부담이 큼

- 미국에 대하여는 냉장 닭고기, 쇠고기, 천연꿀, 분유, 치즈 등 일부 낙농품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돼지고기는 한·미 FTA에서 관세철폐 기간이 10년 이내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없을 수 있음

표 8. TPP 참여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 예상 품목(축산물)

구 분	미국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TPP 영향
닭고기 (냉장)	12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10년	10년	ASEAN, 싱가포르
닭고기 (부위별/ 냉장)	10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10년	10년	ASEAN, 싱가포르
닭고기 (부위별/ 냉동)	12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DDA 이후	10년	ASEAN, 싱가포르, 칠레
돼지고기 (냉장)	10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10년	10년/16년 ¹⁾	ASEAN, 싱가포르, 칠레
돼지고기 (냉동)	2016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10년	10년/16년 ²⁾	ASEAN, 싱가포르, 칠레
쇠고기 (신선/냉장)	15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	미국, 페루, ASEAN, 싱가포르,
쇠고기(냉동)	15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	미국, 페루, ASEAN, 싱가포르
낙농품 (밀크와 크림)	15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낙농품(분유)	현행유지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낙농품 (요구르트)	10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10년	10년	ASEAN, 싱가포르
낙농품(버터)	10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16년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낙농품(유장)	10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낙농품(치즈)	15년	2016년까지 5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양허제외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낙농품(유당)	5년/10년	2008년	양허제외	DDA 이후	16년	싱가포르, 칠레, 페루
천연꿀	현행유지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16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주. 우리나라가 TPP 협상 참여시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낙농품은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12년 철폐로 가정하고, 나머지 품목은 10년 철폐로 가정함

- 한·ASEAN FTA에서 우리나라는 축산물 시장개방 수준이 낮기 때문에 TPP 가입시 ASEAN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음. 축산물 가운데 냉장 닭고기의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10년간 50%의 관세감축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남아 있음. 유당의 경우는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 없음
 - 쇠고기, 돼지고기, 천연꿀, 유당을 제외한 주요 낙농품 등은 한·ASEAN FTA에서 관세 철폐 예외 또는 관세감축 20% 정도로 양허된 것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크게 남아 있음
- 칠레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발생할 축산물은 냉동 닭고기, 쇠고기, 요구르트를 제외한 주요 낙농품 등임. 냉장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한·칠레 FTA에서 이미 관세철폐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 없음
- 페루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발생할 축산물은 쇠고기, 버터, 치즈, 분유 등의 낙농품, 천연꿀 등

□ 과일: 전반적으로 추가적 시장개방 부담이 발생

- 과일은 한·미 FTA 협상에서 10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설정한 품목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큰 품목에 속함. 한·미 FTA에서 10년까지의 관세철폐 기간이 설정된 것은 바나나, 단감, 복숭아, 파인애플 정도에 불과함. 사과, 배, 포도, 감귤 및 오렌지, 참다래 등 주요 과일은 대부분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발생
-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 등 ASEAN 국가로부터 수입 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한·ASEAN FTA에서 관세철폐 예외로 하였고, 사과, 배 등 중요한 온대성 과일은 관세철폐 대신 관세의 부분 감축(20%, 50% 등)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TPP 가입에 따른 ASEAN 국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
- 칠레와의 FTA에서 사과와 배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감귤,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 열대성 과일은 DDA 협상 이후에 시장개방 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TPP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추가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

- 페루와의 FTA에서 현행관세가 유지되는 과일은 감귤, 배, 사과 등이고, 포도와 오렌지도 수확기에는 현행관세가 유지됨. 따라서 이들 품목은 TPP 가입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발생

표 9. TPP 참여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 예상 품목(과일)

구 분	미국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TPP 영향
감귤	15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단감	10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10년	10년	ASEAN, 싱가포르
감(곶감)	10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바나나	5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DDA 이후	5년	ASEAN, 싱가포르, 칠레
배	20년(동양배)	2016년까지 50% 이하	양허제외	양허제외	현행유지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복숭아	10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10년	10년	ASEAN, 싱가포르
사과	20년(후지)	2016년까지 50% 이하	양허제외	양허제외	현행유지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오렌지	현행유지+ 계절관세	2016년까지 50% 이하	양허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 계절관세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파인애플 (신선)	10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DDA 이후	10년	ASEAN, 싱가포르, 칠레
포도	17년+계절 관세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10년+계절관세	현행유지+ 계절관세	미국, 페루 ASEAN, 싱가포르
참다래	15년	2016년까지 5% 이하	10년	10년	10년	미국, ASEAN
은행	10년	2008년	양허제외	DDA 이후	10년	싱가포르, 칠레
잣	15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10년/DDA 이후9)	16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주: 우리나라가 TPP 협상 참여시 감귤, 배, 복숭아, 사과, 포도는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12년 철폐로 가정하고, 나머지 품목은 10년 철폐로 가정함

□ 채소 및 특작: 대부분의 품목에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 발생

- 한·미 FTA 협상에서 채소 및 과채류의 시장개방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TPP 가입에 따라 대부분의 주요 채소 및 과채류, 인삼 등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존재
 - 수입 증가 가능성이 낮은 당근, 신선 딸기, 배추, 호박 등이 관세철폐 10년 이내에 속하는 품목이고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은 관세철폐 기간이 10년 이상
- 배추, 오이, 당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소류는 ASEAN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특히 한·ASEAN FTA에서 관세양허 제외 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 칠레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도 ASEAN의 경우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오이, 호박, 배추, 당근 등 일부 채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요 채소 및 과채류가 한·칠레 FTA 협상에서 DDA 이후 논의 품목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TPP 가입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음
- 페루와의 FTA에서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현행관세 유지로 양허된 품목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발생. 그밖에도 16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땅콩, 생강, 참깨, 표고버섯 등 채소 또는 특작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도 예상

표 10. TPP 참여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 예상 품목(채소/특작)

구분	미국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TPP 영향
고추	15년	양허제외	양허제외/10년1)	즉시/DDA 이후2)	현행유지/10년11)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녹차	15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DDA 이후	16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당근	5년	2010년/즉시3)	양허제외/10년4)	10년	10년	싱가포르
대추	12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10년/DDA 이후5)	현행유지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딸기 (신선)	9년	2016년까지 5% 이하	10년철폐	DDA 이후	10년	ASEAN, 칠레
땅콩	15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16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마늘	15년	양허제외	양허제외/10년6)	DDA 이후	현행유지/10년12)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밤	15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10년/DDA 이후7)	현행유지/10년/16 년13)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배추 (신선)	5년	2010년	10년	5년	10년	-
생강	15년	2016년까지 5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16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양파 (신선/냉장, 건 조)	15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양파 (냉동)	12년	2016년까지 5% 이하	10년	10년	10년	ASEAN
오이 (신선)	즉시철폐	2010년	양허제외	10년	10년	싱가포르
인삼	18년/15년8)	2016년까지 5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현행유지/16년14)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참깨	15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16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표고 버섯	15년	2016년까지 5% 이하	양허제외	10년/DDA 이후 10)	16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호박 (신선)	즉시철폐	2016년까지 5% 이하	10년	10년	10년	ASEAN

주: 우리나라가 TPP 협상 참여시 고추, 마늘, 양파, 인삼은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12년 철폐로 가정하고, 나머지 품목은 10년 철폐로 가정함

4. TPP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모델로 발전 가능성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또는 경제통합 움직임은 APEC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임. APEC의 성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ASEAN+3 또는 ASEAN+6 등 ASEAN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또한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경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
- APEC과 ASEAN+3(또는 6)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통합의 확실성 속에 TPP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로 수준 높은 시장개방을 통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일본이 TPP 참여 선언을 하면서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10개국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TPP 가입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일본의 TPP 참여 선언(2011.11)에 이어 캐나다, 멕시코도 TPP 참여 선언

□ 일본의 TPP 가입은 우리나라의 참가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의 TPP가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기존의 FTA에서 시장개방 수준이 낮은 분야의 개방에 따른 긍정적 영향은 있을 것으로 전망
 - 일본이 TPP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우리나라도 가입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음.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주요 TPP 회원국 또는 후발 협상국들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거나 협상 진행중
 - 기존 FTA에서 우리나라의 비농산물 분야 시장개방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평가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관세율도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이익은 제한적

- 농산물 분야는 시장개방 수준이 비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관세율도 높아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의 기존 FTA 협상에서의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수준은 한·미 FTA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 TPP의 시장개방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또는 목표를 받아들이면서 가입할 경우 그에 따른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농산물 전반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일본의 협상 결과를 지켜본 후 TPP 가입 여부를 결정

-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후발 5개국의 TPP 가입 협상과 일본의 TPP 가입 시연계 될 관세양허 혜택을 들 수 있음
 - 후발 5개국의 TPP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수준에 따라 일본의 민감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수준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우리나라의 TPP 가입 협상에서 민감분야는 농산물이 될 것이며, 농산물 시장개방 수준이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보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일본의 민감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수준이 우리나라의 TPP 가입 조건 및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우리나라는 TPP 참여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과는 이미 FTA를 체결하였고, 호주, 뉴질랜드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
- 후발 5개국의 TPP 가입 여부 및 일본의 협상을 지켜본 후 우리 농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비농산물 분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긍정적 영향 등을 분석하여 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표 1. 뉴질랜드의 농산물 중 즉시철폐 예외 품목

세번	품목명	관세율 (%)	관세감축 이행계획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1069091	알코올이 포함된 얼음 혼합물 (식용)	7	5	4.5	4	3	0	0	0	0	0	0
21069092		7	5	4.5	4	3	0	0	0	0	0	0
21069093		7	5	4.5	4	3	0	0	0	0	0	0
21069094		7	5	4.5	4	3	0	0	0	0	0	0
21069095		7	5	4.5	4	3	0	0	0	0	0	0
21069097		7	5	4.5	4	3	0	0	0	0	0	0
21069098		7	5	4.5	4	3	0	0	0	0	0	0
21069099		7	5	4.5	4	3	0	0	0	0	0	0

자료: WTO, 뉴질랜드 양허안(TPP)

부표 2. 칠레의 농산물 중 10년 이상 장기철폐 품목

세번	품목명	관세율 (%)	관세감축 이행계획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0019000	밀과 메슬린(기타)	31.50	31.50	31.50	28.90	26.30	23.70	21.00	15.80	10.50	5.30	0.00	0.00	0.00
1101000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31.50	31.50	31.50	28.90	26.30	23.70	21.00	15.80	10.50	5.30	0.00	0.00	0.00
15071000	대두유와 그 분획물(조유 및 기타)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07901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07909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081000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0890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091000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0990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0000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11000	팜유와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1110	해바라기씨유·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112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1911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1919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192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21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29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31100	야자(코프라)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319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321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41100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419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491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499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52100	기타 비취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바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529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550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5901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5909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79090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기타)	6.00	5.40	4.80	4.20	3.60	3.00	2.40	1.80	1.20	0.60	0.00	0.00	0.00
17011100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17011200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17019100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17019910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17019920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17019990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세번	품목명	관세율 (%)	관세감축 이행계획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7022000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300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400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500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601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602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609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901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909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31000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에 한한다)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3900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4021000	밀크와 크림 (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1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2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3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4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5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6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7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8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2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1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2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3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4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5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6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7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8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2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911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912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991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999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39000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 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세 번	품목명	관세율 (%)	관세감축 이행계획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4041000	유장과 변성유장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51000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 (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 스프레드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520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590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61030	치즈와 커드 (모짜렐라치즈, 체다치즈, 고다치즈, 에담치즈)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6109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6901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6902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6903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6909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자료: WTO, 칠레 양허안(TPP)

부표 3. 브루나이의 관세 즉시철폐 이외 농산물의 이행계획서

세번	품목명	관세율	관세감축 이행계획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9011110	커피	11¢/kg	11¢/kg				0	0	0	0		
09011190		11¢/kg	11¢/kg				0	0	0	0		
09011210		11¢/kg	11¢/kg				0	0	0	0		
09011290		11¢/kg	11¢/kg				0	0	0	0		
09012110		22¢/kg	22¢/kg				0	0	0	0		
09012120		22¢/kg	22¢/kg				0	0	0	0		
09012210		22¢/kg	22¢/kg				0	0	0	0		
09012220		22¢/kg	22¢/kg				0	0	0	0		
09021010	차류 (녹차, 홍차, 마태차 등)	22¢/kg	22¢/kg				0	0	0	0		
09021090		22¢/kg	22¢/kg				0	0	0	0		
09022010		22¢/kg	22¢/kg				0	0	0	0		
09022090		22¢/kg	22¢/kg				0	0	0	0		
09023010		22¢/kg	22¢/kg				0	0	0	0		
09023090		22¢/kg	22¢/kg				0	0	0	0		
09024010		22¢/kg	22¢/kg				0	0	0	0		
09024090		22¢/kg	22¢/kg				0	0	0	0		
21011110	커피, 차 조제품	5	5		0	0	0	0	0	0	0	
21011190		5	5		0	0	0	0	0	0	0	
21011200		5	5		0	0	0	0	0	0	0	
21012000		5	5		0	0	0	0	0	0	0	
21069061	조제 식료품 (알콜음료 용)	\$250.00/dal ²⁾	\$250.00/dal									
21069062		\$250.00/dal	\$250.00/dal									
21069063		\$250.00/dal	\$250.00/dal									
21069064		\$250.00/dal	\$250.00/dal									
21069065		\$250.00/dal	\$250.00/dal									
21069066		\$250.00/dal	\$250.00/dal									
21069067		\$250.00/dal	\$250.00/dal									
21069069		\$250.00/dal	\$250.00/dal									
22030010	맥주	\$30.00/dal	\$30.00/dal									
22030090		\$30.00/dal	\$30.00/dal									
22041000	포도주 및 포도즙	\$120.00/dal	\$120.00/dal									
22042111		\$55.00/dal	\$55.00/dal									
22042112		\$90.00/dal	\$90.00/dal									
22042121		\$55.00/dal	\$55.00/dal									

세번	품목명	관세율	관세감축 이행계획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2042122		\$90.00/dal	\$90.00/dal									
22042911		\$55.00/dal	\$55.00/dal									
22042912		\$90.00/dal	\$90.00/dal									
22042921		\$55.00/dal	\$55.00/dal									
22042922		\$90.00/dal	\$90.00/dal									
22043010		\$55.00/dal	\$55.00/dal									
22043020		\$90.00/dal	\$90.00/dal									
22051010	베르무트 ¹⁾ 과 이와 비슷한 포도주	\$55.00/dal	\$55.00/dal									
22051020		\$90.00/dal	\$90.00/dal									
22059010		\$55.00/dal	\$55.00/dal									
22059020		\$90.00/dal	\$90.00/dal									
22060010	기타 발효주	\$30.00/dal	\$30.00/dal									
22060020		\$90.00/dal	\$90.00/dal									
22060030		\$90.00/dal	\$90.00/dal									
22060040		\$30.00/dal	\$30.00/dal									
22060050		\$30.00/dal	\$30.00/dal									
22060090		\$30.00/dal	\$30.00/dal									
2207100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콜	\$250.p.p.dal	\$250.p.p.dal									
22082010	브랜디, 위스키, 럼, 태피아, 진, 제네바, 보드카 등	\$250.p.p.dal	\$250.p.p.dal									
22082020		\$250.p.p.dal	\$250.p.p.dal									
22082030		\$250.p.p.dal	\$250.p.p.dal									
22082040		\$250.p.p.dal	\$250.p.p.dal									
22083010		\$250.p.p.dal	\$250.p.p.dal									
22083020		\$250.p.p.dal	\$250.p.p.dal									
22084010		\$250.p.p.dal	\$250.p.p.dal									
22084020		\$250.p.p.dal	\$250.p.p.dal									
22085010		\$250.p.p.dal	\$250.p.p.dal									
22085020		\$250.p.p.dal	\$250.p.p.dal									
22086010		\$250.p.p.dal	\$250.p.p.dal									
22086020		\$250.p.p.dal	\$250.p.p.dal									
22087010		\$250.00/dal	\$250.00/dal									
22087020		\$250.00/dal	\$250.00/dal									
22089010		\$90.00/dal	\$90.00/dal									
22089020		\$120.p.p.dal	\$120.p.p.dal									
22089030		\$90.00/dal	\$90.00/dal									

세번	품목명	관세율	관세감축 이행계획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2089040		\$120.p.p.dal	\$120.p.p.dal										
22089050		\$90.00/dal	\$90.00/dal										
22089060		\$120.p.p.dal	\$120.p.p.dal										
22089070		\$250.00/dal	\$250.00/dal										
22089080		\$250.00/dal	\$250.00/dal										
22089090		\$120.p.p.dal	\$120.p.p.dal										
24011010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30.00/kg	\$30.00/kg										
24011020		\$30.00/kg	\$30.00/kg										
24011030		\$30.00/kg	\$30.00/kg										
24011090		\$30.00/kg	\$30.00/kg										
24012010		\$30.00/kg	\$30.00/kg										
24012020		\$30.00/kg	\$30.00/kg										
24012030		\$30.00/kg	\$30.00/kg										
24012040		\$30.00/kg	\$30.00/kg										
24012050		\$30.00/kg	\$30.00/kg										
24012090		\$30.00/kg	\$30.00/kg										
24013010		\$30.00/kg	\$30.00/kg										
24013090		\$30.00/kg	\$30.00/kg										
24021000		시가, 켈런	\$100.00/kg	\$100.00/kg									
24022010			\$60.00/kg	\$60.00/kg									
24022090	\$60.00/kg		\$60.00/kg										
24031011	기타제조 담배	\$60.00/kg	\$60.00/kg										
24031019		\$60.00/kg	\$60.00/kg										
24031021		\$35.00/kg	\$35.00/kg										
24031029		\$35.00/kg	\$35.00/kg										
24031090		\$35.00/kg	\$35.00/kg										
24039100		\$60.00/kg	\$60.00/kg										
24039940		\$60.00/kg	\$60.00/kg										
24039950		\$60.00/kg	\$60.00/kg										
24039960		\$60.00/kg	\$60.00/kg										
24039990		\$60.00/kg	\$60.00/kg										

주: 1) 베르무트(vermouth)는 백포도주에 향초 등을 가미한 술을 의미함.

2) dal은 decaliter로 10리터를 의미함.

자료: WTO, 브루나이 양허안(TPP)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2년

- 제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회)
- 제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2. 7

발 행 2012. 2. 8

발 행 인 이동필

편집위원 김정호, 김병률, 김창길, 박시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